

▣ 특별공급 공통 사항

구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 자격	주택 소유	세대원 전원 무주택				
	기본 자격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은 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자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 혼인 자녀가 있는 자
	제한 사항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당첨사실제한 적용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청약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주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가능 주택형 (당 사업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 71, 79, 81, 84A, 84B, 84C, 84D, 84E 다자녀가구 : 71, 79, 81, 84A, 84B, 84C, 84D, 84E, 131 노부모부양 : 84A, 84B, 84C, 84D, 84E, 131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 지역별예치금이상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 이상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각 유형별 공급 세대수의 3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 1세대 내 동일한 세대구성원이 각각 중복신청(특공+특공)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봄(노부모부양 제외)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로 동일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 후 입주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 같은 주택형 다른 공급 유형의 낙첨자들과 함께 추첨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해야함 소형자가주택 1채 이상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대상세대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71	1	1	0	0	1
79	0	0	1	1	0
81	1	1	0	0	1
84A	0	0	1	1	1
84B	1	1	0	0	0
84C	0	0	1	0	1
84D	0	1	0	1	0
84E	1	0	0	0	1
131	0	0	0	0	0
합계	4	4	3	3	5

▣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 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해당기관 및 청약통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추천대상자</th> <th>청약통장</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d>필요 없음</td> </tr> <tr> <td>국가유공자 등</td> <td>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td> <td>필요 없음</td> </tr> <tr> <td>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 rowspan="3">청약통장 가입 후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td> </tr> <tr> <td>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r> <tr> <td>중소기업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td> </tr> </tbody> </table>	구분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필요 없음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청약통장 가입 후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구분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필요 없음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청약통장 가입 후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우선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름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해당기관에 신청 → 관계기관의 장이 우선순위 결정(예비대상자 포함) 및 사업주체에 명단통보 → 통보 대상자의 특별공급 청약 (예비대상자 포함) ※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함으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주택형별 대상세대

구분	71	79	81	84A	84B	84C	84D	84E	131	합계
배정세대수	1	1	1	3	2	2	2	2	5	19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자상을 선정 - 다자녀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 포함)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택형별 대상세대

구분	71	79	81	84A	84B	84C	84D	84E	131	합계
배정세대수	8	4	8	6	3	3	3	3	0	38

□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만족 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당첨자 선정 방법	<p>[소득 > 순위 > 거주지역]</p> <p>1. 우선공급 7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우경 120%이하)일반공급 3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p> <p>2. 동일 요건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p> <p>① 제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p> <p>※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p> <p>② 제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등기완료에 한함)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p> <p>3.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p> <p>- 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p> <p>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p> <p>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p> <p>※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p> <p>※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p> <p>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p> <p>- 제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p> <p>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p> <p>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p> <p>※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p> <p>※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p> <p>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소득 구분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이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본 아파트의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부적격 등) 발생 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임신 및 입양의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 및 입주 시 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521,049원~ 10,529,467원	7,947,892원~ 11,127,047원	8,374,735원~ 11,724,62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9,025,259원~ 12,033,677원	9,537,470원~ 12,716,626원	10,049,682원~ 13,399,574원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택형별 대상세대

구분	71	79	81	84A	84B	84C	84D	84E	131	합계
배정세대수	0	0	0	1	1	0	1	1	2	6

▣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1)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3조 :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13세대

▣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제28조 제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p>※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777,362원	10,332,258원	10,887,154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초과~ 160%이하	7,839,209~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777,363원~ 12,033,677원	10,332,259~ 12,716,626원	10,887,155~ 13,399,57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 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